

서울대교구 목5동성당 사목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소재)

- 1) 본회는 서울대교구 목5동 성당(이하 ‘본당’이라 부른다) 사목협의회라 부른다.
- 2) 본회는 ‘본당’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 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1베드 4,10-11)라고 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본회는 전 신자를 위하여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토의, 심의, 평가하여 실천 방안을 모색, 추진함에 있어 본당 주임사제의 협조자로서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본회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모임으로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총회장
- 2) 자문위원
- 3) 부회장
- 4) 총구역장(구역분과장)
- 5) 총무, 부총무
- 6) 분과위원장
- 7) 분과위원

제4조 (선임):

모든 회원은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총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들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2) 부회장과 총무, 부총무 및 분과 위원장은 총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3) 총구역장(구역분과장)은 구역장들의 의견과 총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4) 분과위원은 별지[사목협의회 기구표] 기재의 각 분과위원회 소속 단체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하되, 총회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 제청하여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제5조 (총회장)

총회장은 본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부회장)

- 1) 부회장은 약간 명을 임명한다.
- 2) 단체 간의 원활한 이해와 소통으로 서로의 수평적 유대와 협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회장은 각기 역할을 나누어 각 분과위원장을 관리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회장 유고 시 직무 대행 부회장은 주임사제가 지명한다.
- 5) 부회장이 1인 이상일 경우에 분과업무 분장하여 담당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총구역장, 구역분과장, 구역총무)

- 1) 총구역장은 남녀 각 1명 씩 총2명을 임명한다. 남녀 총구역장은 부부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녀를 각각 임명할 수 있다.
- 2) 총구역장은 구역 및 반 모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3) 총구역장은 주임사제에게 구역장 임명을 제청한다.
- 4) 총구역장은 구역분과장을 겸임한다.
- 5) 본당 구역 및 반모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할 구역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총무)

- 1) 총무는 총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 2)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분과위원장)

- 1) 분과위원장은 총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와 소속 단체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 실행한다.

- 2) 분과위원장은 년1-2회이상 소속 단체의 회칙과 회계장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단체장 변경시 인수인계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사목협의회 및 총회장에 보고 해야 한다.
- 3) 각 분과위원장의 고유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분과위원장 : 각 분과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서 작성과 사목협의회에 제출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한다.
 2. 전례분과위원장 :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
 3. 선교분과위원장 : 교회 발전을 위한 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쉬는 신자 인도와 성가정 운동과 관련된 사항.
 4. 교육분과위원장 :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신심분과위원장 : 신심 강화를 위하여 각 단체 모임을 활성화하고 전 교우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기 성찰 방안 강구,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역분과위원장 : 총구역장이 겸임하며, 구역 공동체와 관련된 제반 실무 관할.
 7. 초등분과위원장 : 초등부 주일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고등분과위원장 :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년분과위원장 :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10. 시설분과위원장 :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1.사회사목실버분과위원장 : 불우이웃돕기, 후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연령회, 해나리 은빛대학 운영과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 12.홍보문화분과위원장 : 본당 홈페이지, 카카오 채널, 해나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본당 전 신자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계획 수립.
 - 13.가정생명분과위원장 : 가정의 중요함을 인식시키며 실천사항을 작성 및 활성화. 인간 생명에 관한 교육을 주관하고 생명의 존중함을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14. WYD분과위원장 : 2027서울 세계청년대회(WYD)의 관한 사항.

제10조 (임기)

- 1) 사목협의회 총회장과 총구역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주임사제의 재신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구성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1조 (자문위원)

본회는 전임 사목협의회 총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 (총회)

- 1) 총회는 제3조 각 호의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필요에 따라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 2) 총회의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3)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월례회)

- 1) 월례회는 제3조 각 호의 회원 중 자문위원과 분과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이 참석하여 매월 1회 개최한다.
- 2) 총회장은 필요시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참석자를 축소 또는 확대 할 수 있다.
- 3) 본회의 심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4) 총회장은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 1)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목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를 운영한다.
- 2) 회장단 회의의 구성은 총회장, 부회장, 총구역장, 총무, 기획재정분과위원장으로 한다.
- 3) 회장단 회의는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소집한다.
- 4)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월례회에 보고, 논의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등)

- 1)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2) 구역장 회의는 월 1회 총구역장이 소집한다.
- 3) 부회장은 필요 시 복수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6조 (정족수)

- 1)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총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총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정족수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5장 회칙 개정 등

제18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 또는 월례회의의 결의를 거쳐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단체결성 승인)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심 봉사, 활동 단체를 새로이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월례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자격 정지)

이 회칙으로 임명된 회원들이 주임사제의 사목 방향에 반하는 언행이나 본당 내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장은 해당 회원의 자격 정지를 주임사제에게 제청할 수 있다.

부칙 (1994. 7. 3)

이 회칙은 199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

- 1) 이 회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들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 1)

- 1)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들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1. 1)

- 1) 이 회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들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1. 1)

- 1) 이 회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들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11. 1)

- 1) 이 회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회칙 시행 시점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6. 11. 1)

- 1) 이 회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서울대교구 지침에 따라 WYD 분과위원장을 신설한다
- 3) 이 회칙 시행 시점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